

의안번호	2209618
의 퇴 인	송옥주 의원
회 답 일	2025. 5. 29.
추 계 번호	25B206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율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004억 5,100만원(연평균 1,000억 9,0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2조 4,966억 700만원(연평균 4,993억 2,200만원) 증가
- 지방비: 5년간 1조 9,961억 5,900만원(연평균 3,992억 3,200만원) 감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재정지원 (안 제19조제1항)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94,787	97,225	99,868	102,733	105,838	500,451	100,090
- 국비	434,134	464,103	496,589	531,804	569,977	2,496,607	499,322
- 지방비	△339,348	△366,878	△396,722	△429,072	△464,139	△1,996,159	△399,232

- 주: 1. 농어업재해보험료의 지원율은 국비 80%, 지방비 10%, 자부담 10%로 가정
 - 음수(△)인 경우 지출액이 감소함을 의미
2. 추계 대상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정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체 농업재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고, 가축질병치료보험은 2025년부터 가축재해보험과 통합 운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
 - 추계기간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연평균 보험료 인상률 8.4%를 적용하고, 가축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없다고 가정
3. 추계기간 동안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변동하지 않고, 2025년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의3 (실태조사)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제1항) 1. 제11조의8에 따른 재평가 및 이의신청 현황 2. 제26조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현황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신청 및 미지급(미지급 사유를 포함한다)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 제3조의2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신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보험정책 수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위원회(이하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11조 (손해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7항 신설)	재량규정
4	안 제19조 (재정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해야 하도록 개정	의무/재량 규정
5	안 제26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등)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재해보험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재해보험사업 운영 지원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제2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1조제7항에 따른 손해평가 및 제11조의8에 따른 재평가·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조의3 (실태조사) 신설		• 미대상 － (안 제2조의3제1항제1·3·4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재평가 및 이의신청 현황, 보험금 지급신청 및 미지급 현황,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은 현재 보험사업자 업무 범위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업무에 해당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안 제2조의3제1항제2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역별·재해별 통계자료 수집·관리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계 수집·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3	안 제11조 (손해평가 등)	－	－ (안 제11조제7항)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1)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기수행 중인 업무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안 제26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여 보험사업관리·감독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기관운영경비 지원 중 － 동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수행하게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기관운영경비는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26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등) 신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지원예산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table><tr><th>소관</th><th>회계·기금</th><th>사업명</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 rowspan="3">농림축산 식품부</td><td>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td><td>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1038-305)</td><td>7,912</td><td>7,951</td><td>8,272</td></tr><tr><td rowspan="2">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td><td>인건비 (7079-101)</td><td>424</td><td>435</td><td>449</td></tr><tr><td>기타경비 (7079-201)</td><td>172</td><td>164</td><td>156</td></tr></table>	소관	회계·기금	사업명	2023	2024	2025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1038-305)	7,912	7,951	8,272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인건비 (7079-101)	424	435	449	기타경비 (7079-201)	172	164	156
소관	회계·기금	사업명	2023	2024	2025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구조 개선 특별회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1038-305)	7,912	7,951	8,272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인건비 (7079-101)	424	435	449																			
		기타경비 (7079-201)	172	164	156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소관	회계·기금	사업명	2023	2024	2025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양식어업재해보험(3443-300) -양식보험사업관리위탁	403	403	40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	안 제3조의2 (기후위기전문위원회)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보험정책 수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보험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와 관련된 사항 - 그러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규모, 운영경비, 의견제시를 위한 연구비용 책정 여부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²⁾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농식품부)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해수부)가 구성·운영중이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³⁾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농식품부)가 구성·운영중임 (단위: 회) <table><tr><th rowspan="2">소관</th><th rowspan="2">위원회 구성</th><th colspan="3">회의개최 횟수</th></tr><tr><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 rowspan="2">농식품부</td><td>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위원 18명 (공무원 15, 민간위원 3)</td><td>5</td><td>4</td><td>7</td></tr><tr><td>농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 - 위원 21명 (공무원 7, 민간위원 14)</td><td>3</td><td>4</td><td>9</td></tr><tr><td>해수부</td><td>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위원 15명 (공무원 12, 민간위원 3)</td><td>4</td><td>3</td><td>3</td></tr></table>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5년 1분기 기준 2. 해양수산부, 「행정기관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5년 1분기 기준						소관	위원회 구성	회의개최 횟수			2022	2023	2024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위원 18명 (공무원 15, 민간위원 3)	5	4	7	농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 - 위원 21명 (공무원 7, 민간위원 14)	3	4	9	해수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위원 15명 (공무원 12, 민간위원 3)	4	3	3
소관	위원회 구성	회의개최 횟수																												
		2022	2023	2024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위원 18명 (공무원 15, 민간위원 3)	5	4	7																										
	농업재해보험심의위원회 - 위원 21명 (공무원 7, 민간위원 14)	3	4	9																										
해수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위원 15명 (공무원 12, 민간위원 3)	4	3	3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4	안 제19조 (재정지원)	○	• 정부의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을 변경 － 정부: 80% 이상 *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의 국비 지원율은 약 50%, 지방비 지원율은 보험별로 약 13~40% 수준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료의 국비 지원율을 80%, 지방비 지원율을 10%로, 자부담은 10%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증감액을 합산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지원율을 특정하기 곤란
 - 따라서 국비 지원율을 개정안에 따른 하한선인 80%로, 지방비 지원율은 10%로 가정하고, 추계기간 동안 현행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자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3.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심의위원회)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이하 생략)

-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의 국비 지원율은 약 50%, 지방비 지원율은 보험별로 약 13~40% 수준이며, 개정안에 따라 국비 지원금은 증가하고, 지방비 지원금은 감소하게 됨
- ※ 보험별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율은 [참고자료 6]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참고

$$\text{추가재정소요} = (\text{개정안에 따른 국비·지방비 증감액}) - (\text{현행 국비·지방비(기준선)})$$

- 추계 대상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정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체 농업재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고⁴⁾, 가축질병치료보험은 2025년부터 가축재해보험과 통합 운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
 - 추계기간 동안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⁵⁾은 변동하지 않고, 2025년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향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예측이 불가함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4) 최근 4년(2022~2025년)간 농업재해보험 연평균 예산 대비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비율은 7.7% 수준

5) 농어업재해보험대상 품목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2025년 기준)

- (농작물재해보험) ('07) 10 → ('08) 15 → ('09) 20 → ('10) 25 → ('11) 30 → ('12) 35 → ('13) 40 → ('16) 50 → ('19) 62 → ('23) 70 → ('24) 73품목 → ('25) 76품목
- (가축재해보험) ('07~'08) 11 → ('09) 13 → ('10) 14 → ('11) 15 → ('12~'25) 16품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5) 21 → ('16) 24 → ('17) 27 → ('18~'23) 28품목 → ('24~'25) 30품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운영 중임
 - (농업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운영중이며,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가축질병치료보험 '24년 종료)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 －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 ※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 [참고자료 2]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개요
 - [참고자료 3] 가축재해보험 사업 개요
 - [참고자료 4] 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 [참고자료 5] 양식어업재해보험 개요
 - [참고자료 6]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표 2]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현황: 2025년 기준

구분	종류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율 (국비)
농업재해보험 (총 107품목)	농작물재해보험 (76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자, 콩, 양과, 벼(일반벼/조사료용벼), 배추, 양상추 등	순보험료의 33~65%
	가축재해보험 (16품목)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영업보험료의 50%
	농업수입안정보험 (15품목)	콩, 포도, 양과, 마늘, 고구마, 감자, 양배추, 보리, 옥수수, 벼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양식어업재해보험 (총 30품목)	본사업 (17품목)	넙치, 전복, 다시마, 굴, 홍합 등	순보험료의 50%
	시범사업 (13품목)	김, 명게, 뱀장어, 미역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농업재해보험 및 양식어업재해보험 예결산 현황: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농림 축산 식품부	농업재해 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508,820	434,451	607,729	531,801	535,584	511,225	484,182
		가축 재해보험	119,093	113,684	119,093	110,553	112,220	107,686	109,930
		농업수입 안정보험	2,500	2,500	2,500	2,500	8,100	6,910	207,817
		가축질병 치료보험	2,000	1,778	1,600	1,593	1,200	1,596	—
		소계	632,413	552,413	730,922	646,447	657,104	627,417	801,929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109,791	109,791	98,811	98,811	98,811	98,811	92,787
	소계		742,204	662,204	829,733	745,258	755,915	726,228	894,716
해양 수산부	양식어업 재해보험	순보험료지원	15,295	12,464	13,899	13,899	15,285	15,049	15,447
		운영사업비 지원	9,603	8,891	8,727	8,124	8,422	8,114	8,422
		양식보험사업 관리위탁	403	422	403	356	403	366	403
		국고보조 미지원액	—	—	—	—	—	—	729
	소계		25,301	21,777	23,029	22,379	24,110	23,529	25,001

주: '22~'24년 농특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부분에 대해 '23~'25년 이월 및 집행 완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나. 재정지원(안 제19조제1항)

□ 최근 3년(2022~2024년)간 농어업재해보험료 및 국비, 지방비, 자부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농작물재해보험) 연평균 보험료는 1조 434억 9,400만원으로 국비 48.5%, 지방비 39.0%, 자부담 12.6%
- (가축재해보험) 연평균 보험료는 2,182억 1,400만원으로 국비 48.3%, 지방비 12.5%, 자부담 39.2%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연평균 보험료는 279억원으로 국비 50.4%, 지방비 32.0%, 자부담 17.6%

[표 4] 농어업재해보험료 및 국비·지방비 지원현황: 2022~2024년

(단위: 백만원, %)

유형		연도	보험료 (A=B+C+D)	국비		지방비		자부담	
				지원금 (B)	비율 (B/A)	지원금 (C)	비율 (C/A)	부담금 (D)	비율 (D/A)
농업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2024	1,141,145	544,222	47.7%	452,709	39.7%	144,213	12.6%
		2023	1,039,681	506,116	48.7%	404,095	38.9%	129,469	12.5%
		2022	949,656	466,677	49.1%	363,288	38.3%	119,692	12.6%
		연평균	1,043,494	505,672	48.5%	406,697	39.0%	131,125	12.6%
	가축 재해보험	2024	221,593	107,414	48.5%	28,162	12.7%	86,017	38.8%
		2023	214,047	103,491	48.3%	26,858	12.5%	83,697	39.1%
		2022	219,002	105,474	48.2%	26,877	12.3%	86,651	39.6%
		연평균	218,214	105,460	48.3%	27,299	12.5%	85,455	39.2%
양식어업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024	30,013	15,049	50.1%	9,711	32.4%	5,253	17.5%
		2023	29,339	14,728	50.2%	9,329	31.8%	5,282	18.0%
		2022	24,349	12,424	51.0%	7,705	31.6%	4,220	17.3%
		연평균	27,900	14,067	50.4%	8,915	32.0%	4,918	17.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적용 금액에서, 현행 국비 및 지방비 지원액(최근 3년('22~'24년)간 연평균 지원액, 기준선)을 차감하여, 보험별 추가재정소요를 계산하고, 이를 단년도(2025년) 기준 금액으로 설정

[표 5] 국비·지방비 지원금 추가재정소요: 단년도(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

		보험료 합계 (A=B+C+D)	국비		지방비		자부담	
			지원금 (B)	비율 (B/A)	지원금 (C)	비율 (C/A)	부담금 (D)	비율 (D/A)
현행 (A)	농작물 재해보험	1,043,494	505,672	48.5%	406,697	39.0%	131,125	12.6%
	가축 재해보험	218,214	105,460	48.3%	27,299	12.5%	85,455	39.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7,900	14,067	50.4%	8,915	32.0%	4,918	17.6%
	소계	1,289,608	625,199	—	442,911	—	221,498	—
개정안 (B)	농작물 재해보험	1,043,494	834,795	80.0%	104,349	10.0%	104,349	10.0%
	가축 재해보험	218,214	174,571	80.0%	21,821	10.0%	21,821	10.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7,900	22,320	80.0%	2,790	10.0%	2,790	10.0%
	소계	1,289,608	1,031,686	—	128,960	—	128,960	—
추가재정소요 (C=B-A)	농작물 재해보험	—	329,124	—	△302,348	—	△26,775	—
	가축 재해보험	—	69,111	—	△5,478	—	△63,634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	8,253	—	△6,125	—	△2,128	—
	합계	—	406,488	—	△313,951	—	△92,537	—

주: 음수(△)인 경우 지출액이 감소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계기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보험료 인상률 8.4%를 적용하고, 가축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없다고 가정
 - 농작물재해보험: 8.4%(최근 3년('21~'23) 주요작물 국고 보험료 연평균 증가율)
 - 가축재해보험: 0%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변동 없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0%(최근 5년간 거대재해 미발생으로 순보험요율의 변동폭이 크지 않아, 요율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⁶⁾)

6) 최근 5년 순보험요율: 2.53%('20) → 2.17%('21) → 2.12%('22) → 2.16%('23) → 2.08%('24)
 다만, 가입어가 수 확대, 가입률 목표 등에 따른 예산 증감이 있었음
 가입어가: ('21) 2,194어가 → ('22) 2,733 → ('23) 2,936 → ('24) 2,926

□ 추계결과, 농어업재해보험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율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004억 5,100만원
(연평균 1,000억 9,0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2조 4,966억 700만원(연평균 4,993억 2,200만원) 증가
- 지방비: 5년간 1조 9,961억 5,900만원(연평균 3,992억 3,200만원) 감소

[표 6] 농어업재해보험 국비·지방비 지원율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보험유형	보험료 지원주체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	356,770	386,739	419,225	454,439	492,612	2,109,785	421,957
	지방비	△327,745	△355,276	△385,119	△417,469	△452,536	△1,938,145	△387,629
	소계	29,025	31,463	34,106	36,971	40,076	171,640	34,328
가축 재해보험	국비	69,111	69,111	69,111	69,111	69,111	345,555	69,111
	지방비	△5,478	△5,478	△5,478	△5,478	△5,478	△27,388	△5,478
	소계	63,634	63,634	63,634	63,634	63,634	318,170	63,63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비	8,253	8,253	8,253	8,253	8,253	41,265	8,253
	지방비	△6,125	△6,125	△6,125	△6,125	△6,125	△30,625	△6,125
	소계	2,128	2,128	2,128	2,128	2,128	10,640	2,128
합계		94,787	97,225	99,868	102,733	105,838	500,451	100,090
	국비	434,134	464,103	496,589	531,804	569,977	2,496,607	499,322
	지방비	△339,348	△366,878	△396,722	△429,072	△464,139	△1,996,159	△399,232

주: 1. 농어업재해보험료의 지원율은 국비 80%, 지방비 10%, 자부담 10%로 가정
 - 음수(△)인 경우 지출액이 감소함을 의미
 2. 추계 대상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정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체 농업재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고, 가축질병치료보험은 2025년
 부터 가축재해보험과 통합 운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
 - 추계기간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연평균 보험료 인상률 8.4%를 적용하고, 가축재해보험과 양식수
 산물재해보험은 보험료 인상이 없다고 가정
 3. 추계기간 동안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변동하지 않고, 2025년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국비 지원율을 80%로, 지방비 지원율을 10%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원율 변경, 보험대상 품목 및 대상자 확대, 보험료율 증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운영중

- (농업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운영중이며,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가축질병치료보험 '24년 종료)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2025년 기준>

구분	종류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율 (국비)
농업재해보험 (총 107품목)	농작물재해보험 (76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자, 콩, 양파, 벼(일반벼/조사료용벼), 배추, 양상추 등	순보험료의 33~65%
	가축재해보험 (16품목)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영업보험료의 50%
	농업수입안정보험 (15품목)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보리, 옥수수, 벼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봄감자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양식어업재해보험 (총 30품목)	본사업 (17품목)	넙치, 전복, 다시마, 굴, 홍합 등	순보험료의 50%
	시범사업 (13품목)	김, 명게, 뱀장어, 미역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 도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⁷⁾

□ 농작물재해보험

연도	대상 품목(품종/작형)	누계
2001	사과, 배	2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6
2006	뽕은감	7
2007	밤, 참다래, 자두	10
2008	콩, 양파, 고추, 시설투(수박)	14
2009	감자(봄감자/고랭지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20
2010	시설투(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25
2011	시설투(꽃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30
2012	인삼, 시설투(멜론, 파프리카), 오디, 차	35
2013	시설투(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40
2014	시설투(배추, 가지, 파)	43
2015	시설투(무, 백합, 카네이션)	46
2016	밀, 시설투(미나리), 양배추, 오미자	50
2017	시설투(쑥갓), 무화과, 유자	53
2018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 브로콜리	57
2019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동), 당근(고랭지/가을·월동), 단호박, 파(대파/쭈파·싹파), 벼(조사료용), 옥수수(조사료용)	62
2020	호두, 팔, 시금치, 보리, 살구	67
2022	배추(가을배추)	67
2023	귀리, 시설투 봄감자, 양상추	70
2024	두릅, 블루베리, 수박	73
2025	생강, 참깨, 녹두	76
합계	76개 품목	

7)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2023.1. 등)

□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축종	누계
1997	소	1
2000	돼지, 말	3
2002	닭	4
2004	오리	5
2005	꿩, 메추리	7
2006	칠면조, 사슴	9
2007	타조, 거위	11
2008	양	12
2009	꿀벌	13
2010	토끼	14
2011	관상조	15
2012	오소리	16
합계	16개 축종	

□ 수입안정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15	콩, 포도, 양파	3
2016	마늘	4
2017	고구마, 가을감자	6
2018	양배추	7
2024	보리, 옥수수	9
2025	감자(봄,고랭지), 벼, 가을배추, 가을무,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15
합계	15개 품목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보험 대상품목(총 30개)

- **본사업 품목(17):**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송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17):** 전국
- **시범사업 품목(13):** 보험의 효용성·실시 가능성 등 검증을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

<시범사업 품목별 사업지역 현황>

품목명	사업지역
김	전남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함평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보령시/ 경기 안산시, 화성시/ 전북 군산시, 부안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 강화군(단, 팽생이 모자반 및 유빙 특약은 특정지역만 가입 가능)
멍게	경남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강원 고성군, 삼척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미역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제주도/ 전남 여수시
뱀장어	전남 영광군, 함평군, 강진군, 무안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해남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충북 충주시
송어	강원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평창군, 삼척시, 철원군, 횡성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경북 구미시, 상주시/ 충북 보은군,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 경기 가평군
미더덕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오만둥이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터봇	제주도
메기	충남 홍성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향어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전남 함평군
전복종자	전남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방어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흰다리새우	충남 당진시, 아산시, 태안군,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참고자료 2]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01~)

□ (대상품목) 76개 품목 및 농작물 재배시설

* ('01년) 2개(사과·배) → ('18) 57 → ('19) 62 → ('20~'22) 67 → ('23) 70 → ('24) 73 → ('25) 76

□ (사업내용)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지원

□ (사업예산) '25년 5,770억원(미지급금 포함)

(단위: 억원)

구분	'20	'21	'22	'23	'24	'25
합계	4,717	4,356	6,719	7,065	6,344	5,770
보험료지원	3,598	3,519	5,621	6,077	5,356	4,842
운영비지원	1,118	837	1,098	988	988	928

□ (가입실적) '12년 이후 가입 증가*, '24년 가입률 54.2%

* ('12) 13.6% → ('19) 38.8 → ('20) 45.0 → ('21) 49.4 → ('22) 49.9 → ('23) 52.0 → ('24) 54.2

□ (지급실적) '01~'24년까지 총 7조 2,434억원 보험금 지급, 재해위험 대비 농가의 경영안정 장치로서 역할

○ (보험금) '24년 24.3만 농가 대상 보험금 1조 208억원 지급

* ('19) 8,980억원 → ('20) 10,158 → ('21) 5,740 → ('22) 5,558 → ('23) 10,042 → ('24) 10,208

○ (손해율) 연도별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01년 이후 '24년까지 누적 손해율은 99.1% 기록

* ('19) 186.2% → ('20) 150.6 → ('21) 74.2 → ('22) 65.0 → ('23) 107.3 → ('24) 97.9

[참고자료 3] 가축재해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97~)

*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 (대상축종) 가축(16축종) 및 축산시설물

*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 (사업내용) 영업보험료(순보험료+운영비)의 50%(가입자별 최대 5천만원)

- (사업예산) '25년 1,099억원

(단위: 억원)

구분	'19	'20	'21	'22	'23	'24	'25
예산	1,206	1,122	1,191	1,191	1,191	1,122	1,099

- (보장내용)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손실 보장

* 자기부담비율(소·말 20%, 가금·돼지 5%)을 제외하고 100% 보상

- (가입실적) '24년 기준 가입률 95.4%(가입두수 298,222천두) 수준

* ('01) 21.7% → ('20) 92.8 → ('21) 93.7 → ('22) 94.7 → ('23) 94.4 → ('24) 95.4

- (지급실적) '97~'24년까지 총 2조 1,278억원 보험금 지급, 재해피해 손실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 (보험금) '24년 16개 축종, 11천 농가, 보험금 2,013억원 지급

* ('19) 1,743 → ('20) 1,477 → ('21) 1,462 → ('22) 1,679 → ('23) 1,648 → ('24) 2,013

- (손해율) '18년 이후 손해율은 점차 안정화 추세

* ('18) 156.1 → ('19) 99.6 → ('20) 80.8 → ('21) 78.9 → ('22) 93.0
→ ('23) 94.2 → ('24) 111.1

[참고자료 4] 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15~)
- (대상품목) '25년 15개 품목
 - * ('15) 3개(콩·포도·양파) → ('16) 4(+마늘) → ('17) 6(+고구마·가을감자) → ('18~) 7(+양배추) → ('24) 9(+옥수수·보리) → ('25) 15(벼,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봄감자)
- (지원내용) 순보험료의 50% 내외, 운영비 100% 지원
- (보장피해)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피해), 화재, 시장가격하락 등
- (소요예산) '25년 2,078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예산 (마지급)	3,159	4,649	4,649	5,149	5,100 (17년 122)	5,257 (18년 108)	2,500	2,500	2,500	8,100	207,817
국고지원	4,133	3,950	17,881	5,257	5,100	4,432	2,500	2,500	2,500	8,100	207,817

- (가입실적) '15~'24년 동안 총 18,544ha, 21,135 농가 가입
 - 품목별 주산지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입률* 저조
 - * 연도별 가입률: ('15) 12.4% → ('17) 20.3 → ('19) 3.7 → ('21) 3.0 → ('22) 3.2 → ('23) 3.3 → ('24) 3.9
 - '24년 기준 총 9개 품목 2,649ha, 3,297 농가 가입
- (지급실적) '15~'24년 동안 총 14,383 농가에 보험금 95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누적 손해율은 131.7%
 - * 연도별 손해율: ('15) 7.7% → ('17) 31.5 → ('19) 185.6 → ('21) 67.8 → ('22) 110.0 → ('23) 150.9 → ('24) 76.6
 - * 연도별 보험금: ('15) 4억원 → ('17) 77 → ('19) 109 → ('21) 25 → ('22) 40 → ('23) 59 → ('24) 63
 - '24년 기준 총 9개 품목 1,872 농가에 보험금 63억원 지급

[참고자료 5] 양식어업재해보험 개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현황) 재해피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입('08), 거대재해의 경우 국가재보험을 통해 국가에서 위험 분담

-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 보험사업자: 수협중앙회
- 대상품목(30개)
 - 본사업: 넙치, 전복, 해삼가두리어류 등 17개 품목
 - 시범사업: 김, 미역, 멥게 등 13개 품목
- 보상재해
 - (주계약)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이상조류, 저수온 등
 - (특약) 전기장치위험, 이상조류·고수온·저수온·수질, 조수, 양식시설물
- 보장수준
 - 수산물: 산지가격의 85~90% 수준으로 보상(보험가입금액 이내)
 - 시설물: 원상복구비 전액(보험가입금액 이내)

- (지원) 보험가입 유도 및 어업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국비 50%, 지방비 15~40%) 및 운영비 전부(100%)를 지원

* 예산: ('20) 268억원 → ('21) 283억원 → ('22) 253억원 → ('23) 230억원 → ('24) 237억원 → ('25) 246억원

- (가입) 정부가 지원하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物的)보험이고, 가입여부는 양식어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임의보험

*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人的보험은 가입의무 부여(ex 산재보험, 어선원보험)

** 가입자 수(가입률): ('20) 3,744어가(39.1%) → ('21) 2,682(28.0) → ('22) 2,733(37.0) → ('23) 2,936(39.8) → ('24) 2,926(39.7)

- 추진절차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를 통해 상품개발, 가입 및 보험금지급 등 일련의 절차 수행, 우리부에서 관리·감독 및 국고 보조

[참고자료 6]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 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676,226	589,676	54.2	1,141,145	544,222	47.7%	145,285	307,424	39.7%	144,213	12.6%	168.8	21.3	263,766	1,020,784
2023	636,727	547,183	52.0	1,039,681	506,116	48.7%	130,793	273,302	38.9%	129,469	12.5%	163.3	20.3	215,368	1,004,249
2022	609,793	512,995	49.9	949,656	466,677	49.1%	116,121	247,167	38.3%	119,692	12.6%	155.7	19.6	162,232	555,777
2021	594,250	497,884	49.4	848,524	417,546	49.2%	100,073	213,311	36.9%	117,595	13.9%	142.8	19.8	172,822	573,989
2020	550,174	440,173	45.0	722,223	355,306	49.2%	84,360	180,563	36.7%	101,994	14.1%	131.3	18.5	225,240	1,015,827
2019	456,024	339,582	38.8	511,146	252,154	49.3%	62,068	123,237	36.3%	73,688	14.4%	112.1	16.2	190,492	898,048
2018	376,593	275,133	32.9	550,149	271,334	49.3%	57,973	126,858	33.6%	93,984	17.1%	146.1	25.0	85,099	534,450

○ 가축재해보험

(단위: 천두,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두수 (천두)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영업 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천두당 영업 보험료 (만원)	천두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298,222	38,631	95.4	221,593	107,414	48.5%	7,954	20,208	12.7%	86,017	38.8%	74.3	28.8	44,881	201,344
2023	290,820	36,333	94.4	214,047	103,491	48.3%	8,071	18,787	12.5%	83,697	39.1%	73.6	28.8	41,967	164,786
2022	288,293	34,023	94.7	219,002	105,474	48.2%	7,929	18,948	12.3%	86,651	39.6%	76.0	30.1	39,181	167,904
2021	285,075	22,791	93.7	230,330	110,741	48.1%	7,859	17,770	11.1%	93,960	40.8%	80.8	33.0	34,600	146,247
2020	276,486	21,760	92.8	225,706	107,528	47.6%	7,373	16,697	10.7%	94,108	41.7%	81.6	34.0	34,739	147,730
2019	284,785	21,448	93.3	214,860	105,619	49.2%	6,915	15,187	10.3%	87,139	40.6%	75.4	30.6	35,996	174,302
2018	278,139	19,706	93.0	187,405	92,003	49.1%	5,400	12,470	9.5%	77,531	41.4%	67.4	27.9	32,356	239,275

○ 수입안정보험(구 농업수입보장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 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2,649	3,297	3.9	9,001	4,500	50.0%	1,005	2,542	39.4%	953	10.6%	339.8	36.0	2,061	6,329
2023	1,233	1,652	3.3	4,299	2,149	50.0%	488	1,185	38.9%	476	11.1%	348.7	38.6	1,507	5,858
2022	1,141	1,566	3.2	4,021	2,011	50.0%	473	1,093	38.9%	445	11.1%	352.4	39.0	1,313	4,020
2021	1,007	1,457	3.0	3,946	1,973	50.0%	442	1,029	37.3%	502	12.7%	392.1	49.8	1,024	2,460
2020	1,561	2,006	4.2	6,638	3,319	50.0%	846	1,624	37.2%	849	12.8%	425.2	54.4	1,153	3,451
2019	1,207	1,643	3.7	6,579	3,290	50.0%	776	1,686	37.4%	828	12.6%	545.2	68.6	1,662	10,912
2018	2,121	1,979	7.3	7,291	3,646	50.0%	821	1,592	33.1%	1,233	16.9%	343.8	58.1	5,595	49,763

주: 수입안정보험은 25년 4월부터 판매 개시

○ 가축질병치료보험

(단위: 천두, 건, 백만원)

연도	가입두 수 (천두)	가입 건수 (건)	보험 가입률 (%)	영업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¹⁾			자부담		천두당 영업보험료(원)	천두당 농가부담보 험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38	726	7.2	3,191	1,596	50%				1,596	50%	83,452,243	41,726,122	27,935	2,453
2023	39	748	7.3	3,182	1,591	50%				1,591	50%	81,747,021	40,873,510	33,503	2,862
2022	44	890	8.3	3,555	1,778	50%				1,778	50%	80,549,214	40,274,607	32,129	2,826
2021	41	865	9.1	3,096	1,548	50%				1,548	50%	76,300,873	38,150,428	27,873	2,502
2020	32	692	7.1	2,501	1,250	50%				1,250	50%	79,154,851	39,577,238	19,700	1,715
2019	31	716	13.3	2,265	1,132	50%				1,133	50%	72,932,425	36,478,559	7,783	717
2018	7	176	6.8	537	268	50%				268	50%	71,677,675	35,838,838	63	7

주: 1) '25년 이전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시범사업지역 지자체와 가입영업점(농축협)에서 지방비를 직접 정산하여, 보험사업자가 지방비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25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단위: 호, 백만원, 신계약 기준)

연도	가입 어가수 (호)	보험가입 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순보험료)		지방비 지원 ¹⁾			자부담 ²⁾		어가당 순보험료 (천원)	부가 보험료 (국고지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어가부담 (E)	어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4	2,926	39.7	30,013	15,049	50	3,761	5,950	32	5,253	18	1,807	7,301	289	31,368
2023	2,936	39.8	29,339	14,728	50	3,469	5,860	32	5,282	18	1,806	6,225	238	10,558
2022	2,733	37.0	24,349	12,424	51	2,803	4,902	32	4,220	17	1,544	4,638	377	9,564
2021	2,194	29.7	20,079	10,013	50	—	—	—	10,066	50	4,588	3,749	238	10,762
2020	2,682	28.0	24,557	12,278	50	—	—	—	12,279	50	4,578	3,642	806	33,195
2019	3,744	39.1	32,820	16,410	50	—	—	—	16,410	50	4,383	6,380	2,617	123,774
2018	4,250	44.3	41,981	20,990	50	—	—	—	20,991	50	4,939	10,359	1,275	75,775

주: 보험료는 환급금이 차감된 금액이며, 보험금은 지급준비금은 제외된 금액임

1) '22년 이전 지방비지원의 경우 지자체와 회원조합이 수기 정산하여 실지원금 파악이 어려우며, '22년 이후 국고지원과 함께 즉시 지원하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
를 통해 실지원금 확인 가능

2) '22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